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71408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공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5970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1.
판 결 선 고	2018.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21,537,219,660원의 취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5행의 "2015. 12. 21."을 "2016. 11. 22."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그 문언상으로는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등에 기부채납하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비과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잠정적·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토지의 취득이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불가분 관계에 있다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잠정적·일시적인 것에 불과한데다가 평택미군기지 시설물 등의 기부채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1호증의 3, 4,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7. 11. 15. 자신의 비용으로 주한미군에 공여할 시설물들을 평택지역에 건설하여 국가(관리청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비용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가 용산기지 반환부지 중 이 사건 토지인 유엔사 부지를 포함한 4개 부지(유엔사, 수송부, 캠프킴, 니블로 배럭스)를 원고에게 양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협약'을 국방부장관과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시행협약에 따라 평택지역에 시설물들을 건설하는 한편,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2016. 11. 22. 대한민국과 이 사건 토지(그 중 일부가 쟁점토지이다)에 관한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2016.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법령의 규정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6-18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김종기

판사 송혜정